

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5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5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의 개정에 따라
- 동 령과 맞게, 행정기구의 명칭과 사무 분장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국 명칭의 변경 : 건설도시국 → 건설교통국
- 사무 분장 조정
 - 교통 관련 업무 : 지역경제국 → 건설교통국
 - 상·하수도 관련 업무 : 건설도시국 → 보사환경국
- 사무분장 용어정비 : 중기 → 건설기계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명칭과 이와관련한 행정사무의 분장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

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현행충청북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무기구 중 건설도시국의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조정 함과 아울러 이와관련 하여 사무분장 내용에 있어 지역경제국소관의 교통행정 관련업무를 건설교통국의 업무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상·하수도 관련업무를 보사환경국 업무로 이관 조정하는 등 관련조문을 해당국 소관에서 삭제 또는 신설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재조정 하려는 것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을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침 부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